

시설물유지관리업

■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기술자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항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시설물유지관리업	950,392원	2억원	64좌 (60,825,088 원)	79좌 (75,080,968 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